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등	3
2. 장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기한 신설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 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 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 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등

개정안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현행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외에 “장애”를 추가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기존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생략) ¹⁾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u>성별</u> 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성별</u> <u>이나 장애를</u> -----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생략) ²⁾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を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は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단서 신설></u> ③・④ (생략)³⁾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0. (생략)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u>성별을</u>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11.・12. (생략)	----- ----- ----- 다만, 본문에 규정된 행위가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 -----<u>성별이나</u> <u>장애를</u>----- 11.・12. (현행과 같음)
--	---

- 1)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지 않도록 하면서(법 제110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0조제2항).

이처럼 현행법이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는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⁴⁾

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의 입법목적은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외에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후보자 등에 대한 중상모략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2010헌바53)
-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와 관련된 내용이나,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법 제110조제2항과 동일함.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대 후보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장애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음.⁵⁾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비방⁶⁾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특정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적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현행 “특정 지역·지

되고(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114 참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2019헌바509)

5) 연합뉴스(2024.10.11.), “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이 최다”

중부일보(2024.4.1.), “22대 총선 D-8, 선거 중반 고발, 비방전...비난으로 얼룩진 총선”

6) 이데일리(2004.4.6.),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 언론보도 중 발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인 또는 성별” 외에 “장애”를 추가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기존 허위사실공표죄(7년, 500~3천만원 이하)보다 가중하여 처벌(10년, 5천만원 이하)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를 동법 제251조에서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10조·제256조 및 제251조 간 비교 》

구분	제110조·제256조	제251조
목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비하·모욕) 대상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성의 조각	규정 없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판례집 7-1, 478 》

“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立法裁量) 내지 형성(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形)이 그 죄질(罪質)의 경중(輕重)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犯罪)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혹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규정이 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法定形)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立法政策)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가중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과 특정 내용(장애)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장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기한 신설

개정안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처리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③ (생략) ⁸⁾ <u><신설></u>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⁹⁾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8)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9)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¹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법 제110조의2제1항), 해당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3항).

그런데,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 및 공고에 대하여 결과의 공고만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제기 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처리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이의제기 처리를 통해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

10)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령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선관위이고, 중앙선관위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해당하며, 서울시 종로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서울시종로구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선관위이고, 서울시선관위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해당함.

11) 머니투데이(2020.4.14.), 언론보도(<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308587666691>) 중 “상대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지난 7일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에 이의제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였으며 전북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4일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리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장애”와 관련된 허위사실로 국한해야 하는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리기한에 있어 이의제기대상자 및 관계기관 등의 증명·소명자료 제출, 이의사실 검토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3일 이내 조치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 최근 공직선거 이의제기 처리기간 현황 》

(단위: %, 기간별 처리건수/이의제기건수)

처리기간 \ 선거명	제22대 국선	제8회 지선
5일 미만	50.0	44.4
5 ~ 9일	29.6	40.0
10 ~ 14일	4.5	13.3
15 ~ 19일	6.8	2.2
20일~25일	9.1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 의 처

02)6788-5332